

외국인에 대한 세금 안내 (공개매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

※ 본 내용은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의 공개매수에 응하시는 KB캐피탈 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I. 소득세(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1) KB 캐피탈 주주님 중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KB 캐피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5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은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및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본건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본건 공개매수대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예정인 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KB 캐피탈 주식의 취득가액 명세서 등 주주정보를 소득지급 전까지 KB 증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KB 증권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소득지급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는 양도가액의 0.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5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2)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을 통하여 이행되는 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 II. 유의사항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본건 공개매수에 대하여 (i)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혹은 (ii)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은 본인의 상임대리인 (Custodian Bank)을 통해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에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상임대리인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건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자로서 KB 증권이 KB 금융지주를 위하여 공개매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 본건 공개매수 관련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88-6611(KB 증권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